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결격사유 적용기간 세분화 등 〉

■ 박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52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어린이집 관련 자격 결격사유 등의 세분화	3
2. 개정안 부칙	12
[참고자료]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성준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14.

3. 회부연월일 : 2026. 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자격 재교부를 금지하고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피해 최소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있었음. 이에 따라 정서적 학대를 범한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 재교부 금지 기한이 정지되어 자격 재교부가 가능한 실정으로, 자격을 재교부 받은 사람이 어린이집 외에 유치원, 늘봄교실 등 다른 시설에도 취업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어린이집 취업 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재교부 하는 단계에서도 이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보육자격의 재교부 제한 기간 설정을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어, 범죄의 경중에 대한 판단과 적용이 지자체별로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재교부 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의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으로 판결받은 법률을 개정하고 어린이집 외에 유치원, 놀봄교실 등 다른 시설의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자격 취소·정지 등에 관한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별 차등없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8조 등).

Ⅲ. 검토의견

1. 어린이집 관련 자격 결격사유 등의 세분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행법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의 결격사유 및 자격 취소사유, 자격 재교부 기한을 교육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제16조(결격사유)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 ----- ----- ----- ----- -----20년 이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	6. ----- -----

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u>20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20 <u>년 이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u> <u>는 기간이</u>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u>10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 ----- ----- ----- -----10년 이내에서 교 <u>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u> -----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 집에 근무할 수 없다.	제20조(결격사유)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u>아니한 자</u>	3. ----- ----- ----- <u>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u> <u>에 따른 자격 재교부 사유를 충</u> <u>족하지 아니한 자</u>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 교사의 자격취소) ① (생 략)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 교사의 자격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② -----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1. (생략)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다만, 「아동복지법」 제3
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
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
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
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
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신 설>

1. (현행과 같음)

2. -----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내
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확정된 날
부터 20년 이내에서 교육부령으
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
년 이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
는 기간이-----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가 제2항에 따
른 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
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누우
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
램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자격

을 재교부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 현행법의 조항 중 제16조제8호(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사유), 제20조제1호(어린이집 근무 결격사유), 제48조제2항제2호(자격 재교부 결격사유)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음¹⁾.

상기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은 이유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이하 “전력자”라 함)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다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취업제한의 제재를 예외없이 관철하고 있는 점에서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 이에 개정안은 아래 표와 같이 현행법을 개정하여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음.

1) 2019헌마813, 2022. 9. 29. 영유아보육법 제16조제8호 등 위헌확인

[개정안 개정내용 요약]

구 분	현행 결격사유	개정안 결격사유
어린이집 설치·운영	1.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u>20년</u> <u>이 지나지 않은</u> 전력자 2.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u>20년</u> <u>이 지나지 않은</u> 전력자 3.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u>10년</u> <u>이</u> <u>지나지 않은</u> 전력자	1.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u>20년</u> <u>이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u> <u>기간이 지나지 않은</u> 전력자 2.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u>20</u> <u>년 이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u> <u>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u> 전력자 3.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u>10년</u> <u>이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u> <u>기간이 지나지 않은</u> 전력자
어린이집 근무	1.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이 지나지 않은 자	1.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u>자격</u> <u>재교부 기한이 지났더라도 ① 취</u> <u>소의 원인 된 사유가 소멸하지</u> <u>않거나 ② 뇌우치는 빛이 인정되</u> <u>지 않는 경우 그리고 교육부령으</u> <u>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u> <u>하지 않은 자</u>
자격취소 후 자격 재교부	1.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u>20년</u> <u>이 지나지 않은</u> 전력자 2.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u>20년</u> <u>이 지나지 않은</u> 전력자 <규정 없음>	1.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u>20년</u> <u>이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u> <u>기간이 지나지 않은</u> 전력자 2.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u>20</u> <u>년 이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u> <u>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u> 전력자 3.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u>10년</u> <u>이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u> <u>기간이 지나지 않은</u> 전력자

현행법의 기본적인 구조는 아동학대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로부터 무조건 20년이 지나야

지만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하거나 어린이집 근무를 할 수 있음(벌금형의 경우에는 10년).

-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범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전력자에게 장기간이 지나야지만 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음.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기간을 달리 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개정안은 현행 조항의 20년(금고 이상의 형)과 10년(벌금형)이라는 법정 기한은 상한으로 하되, 교육부령으로 세부 기한을 규정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죄질, 재범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결격사유 기간을 세분화함으로써 기존 위헌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 참고자료 1, 2 참조)

- 그런데 「아동복지법」은 유사한 사유로 위헌 판결을 받아 2018년에 이미 개정을 한 바 있음.

[「아동복지법」 신구조문대비표]

아동복지법(법률 제14887호)	현행 아동복지법(법률 제20929호)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약식명령을 포함한

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단순위헌, 2017헌마130, 2018. 6. 28. 아동복지법(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된 것)]	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즉, 전력자는 기존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10년이 법정 결격사유 기한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죄질,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었던 반면,

2018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양형과 동시에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도 함께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죄질, 경중 등을 면밀하게 심사한 법원으로 하여금 취업제한기간도 결정하도록 하여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도 “전력자의 취업제한에 있어서 재범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와 같이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개정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영유아보육법」 위헌 판결문도 유사하게 법관이 전력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 심사하여야 함을 판시하고 있음²⁾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아동복지법」과 유사한 체계를 구성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교육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위헌성 해소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결격사유 적용기간을 세분화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임.

경상북도 교육청은 범죄의 경중을 기준으로 자격 재교부 가능성을 행

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어느 정도로 취업 제한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심사의 세부적 절차와 심사권자 등에 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청이 판단하는 것은 객관성과 형평성 확보가 어렵다고 보아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시행일만 규정하고 있음(안 부칙).

나. 검토의견

-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였을 때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신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기술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³⁾, 「아동복지법」 개정 당시 부칙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아동복지법」 [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일부개정] 부칙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3년 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

3) 신법 시행 전에 이미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 신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신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보호와 공익을 비교 형량한 결과 신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 법제실, p. 852)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
3.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교육부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자격 재교부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7

참고 1

결격사유 적용 기간 가중 입법례

구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제1항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19조의2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제2항	「우편법」 제2조제6항
적용 대상	택시운수 종사자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자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종사자 (배달대행기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우편물 집배업무 종사자
제한 기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대상 범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형법」 제332조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형법」 제332조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구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제1항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19조의2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제2항	「우편법」 제2조제6항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참고 2

참고 1의 법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사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② 법 제24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20년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4년

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6년

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타. 「형법」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18년

파. 「형법」 제332조(제330조 및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0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

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3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 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 27.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2. 11.>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 부칙 <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3년 초과와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
3.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 카. (생략)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 하. (생략)